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박성재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4. 1. 16. 공포, 2024. 7. 17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금 등의 지급·사용 및 관리(안 제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)

- 1)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 규모, 착수 시기 및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해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음
- 2) 연구개발기관은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고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별표2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
- 3) 법무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

나.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규정을 적용함(안 제3조의2제5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3. 21. ~ 4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음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출연금 등의 지급·사용 및 관리)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2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(이하 “연구개발기관”이라 한다)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, 착수시기,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(計定)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별표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출연금 등의 지급 · 사용 및 관리)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(이하 “연구개발기관”이라 한다)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규모, 착수시기, 정부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(計定)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 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별표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</u> <u>④ 법무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제1항의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</u>

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